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0
----------	------

발의연월일 : 2020. 6. 26.

발 의 자 : 태영호 · 김예지 · 정희용
이명수 · 홍준표 · 이주환
장기윤 · 조정훈 · 이종배
김미애 · 권명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두고 있고,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대하여 일간지와 지방지에 광고를 실는 정도의 형식적 절차만 갖추고, 설명회·공청회에 실제 참여하는 주민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청회에 대한 주민 참여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의 하자가 발생하

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조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환경영향평가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과 같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므로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뇌물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청·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전단).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제

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신설).

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72조의2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으로, “개최”를 “개최 및 공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이 공청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⑥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중 “필요가 있는”을 “필요가 있거나 제13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장에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41조제1항·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3. 제7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

기관의 임직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⑥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개최 및 공개-----

정한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생략)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3조제5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⑥·⑦ (생략)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 제1항·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하자가 있는 경우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신 설>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위원 가운데 공무
원이 아닌 위원
2. 제41조제1항·제2항과 제68
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
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
원
3. 제7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
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